

出帆하려는 그린라운드와 우리의 對應姿勢

玄鶴淳*

目 次

I. 머리말	V. 그린라운드 協商과 輸出業界의 打擊
II. WTO의 出帆과 貿易環境의 變化	VI. 그린라운드와 우리의 對應姿勢
III. 그린라운드의 出帆準備	VII. 맺 음 말
IV. 出帆하려는 그린라운드의 輪廓	

I. 머리말

환경 오염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유발되고 있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소비행위를 통해서도 각종 汚染物質이 배출되며 또한 사용 후 폐기시에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40年 동안에 世界人口는 2배 이상이나 늘어났으며 世界의 經濟規模는 5배나 확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汚染物質의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1972年에 UN은 人間環境宣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UN人間環境宣言을 할 당시의 냉전 체제하에서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동서 양 진영간의 대립으로 인해 환경규제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냉전 체제의 종식과 때를 같이 한 환경규제에 대한 노력은 국제적 차원에서 본격화 되었으며, 급기야는 '92年 6月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루에서 178개 국가의 頂上들과 代表들이 참석한 가운데 UN環境開發會議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기치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는 리우선언과 이의 행동강령인 議題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최근에 이르러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는 것은 지구환경 파괴의 영향이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데다, 환경 보호는 어느 한 나라나 특정 국가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무역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환경보호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94年 4月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의 제8차 多者間 貿易協商文書에 서명을 하기 위해 갖은 閣僚會議에서 발표된 4개의 閣僚決定文書 중에 貿易과 環境에 관한 決定이 포함되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教授

어 있으며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GATT체제에 이은 WTO 체제하에서 개최될 제1차 다자간 무역협상은 環境貿易協商 즉,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될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이 그린라운드의 출범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새로운 라운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그린라운드의 출범준비 및 그 윤곽과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자세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WTO의 出帆과 貿易環境의 變化

'93년 12월 15일, 7년 반이나 끌어오던 UR협상이 타결된 바 있는데, 이 협상타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첫째,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한 市場開放의 확대이고, 둘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출범을 통한 多者間 貿易體制의 制度的 基盤 強化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개방의 확대는 工産品의 경우 關稅率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고 금액기준으로 공산품 교역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철강, 목재, 종이, 화학제품 등 9개 분야에서 주요 국가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하기로 하는 등 유형·무형의 각종 무역장벽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 및 자본의 이동을 획기적으로 자유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UR협상은 항구적이고 강력한 구속력을 갖춘 WTO를 출범시키므로써 앞으로 多者間 貿易體制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 WTO는 1948년 HAVANA 헌장이라고도 불리는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가 流産된 지 47년만에 변신하여 탄생된 새로운 국제기구인 것이다.

世界의 經濟憲法이라 할 수 있는 WTO의 설립협정은 前文과 16個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WTO의 機能, 構造, 組織, 加入 및 脫退, 議決方法 등을 규정하고 있다. WTO 설립협정은 '94년 12월 31일까지 81개 국가에서 비준절차를 마무리 함으로써 '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협약들은 크게 자유화관련협약과 제도관련협약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자유화관련협약으로는 GATT 1994,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농산물협정 등이 있으며 해당분야의 시장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각국의 개방약속과 양허조건을 담은 국가별 양허표가 첨부되어 있다. 제도관련협약으로는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교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무역정책검토협정(TPRM),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등이 있으며

교역관련 제도정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WTO 체제의 특징은 GATT 체제와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사회에서 法の支配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GATT 체제하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산물 및 섬유분야까지 편입시켜 교역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각국의 교역정책과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경없는 교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GATT 체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계무역질서를 표방하는 WTO 체제는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배려하는 평등이념보다는 경제적 강자인 선진국에 유리한 무역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산업정책으로 실시해 오던 보조금 지원 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농산물분야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크게 후퇴하였고,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 실현이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에서는 더 이상 국내 사정을 이유로 시장개방을 미루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왔던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수단들이 앞으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企業들이 開放化時代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의 출범은 새로운 貿易協商(New Round)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종소리로 인식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WTO가 출범한 후 첫번째 개최되는 理事會에서는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하도록 明文化했기 때문이다. 環境과 貿易에 관한 多者間協商은 Green Round라 불리게 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이 라운드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21세기의 國際經濟秩序를 규율하게 될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라운드는 그린라운드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을 국제무역에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Blue Collar Round)가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全世界적으로 1億名 이상의 어린이가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UN의 통계자료가 밝히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는 中國의 경우 죄수들이 이른 바 3D業種(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UN에 제출 한 바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는 '92 年次報告書에서 印度의 경우 4千 5百萬名의 어린이가 각종 사업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아프리카에서는 노동인구의 17%가 어린이고, 南美의 경우 노동인구의 26%가 어린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先進國들이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後進國들이 先進國과의 技術格差

를 줄이기 위해 個別企業에 대한 財政資金으로 技術開發을 지원하는 정책을 막으려고 함과 동시에 先進國에서 개발한 기술을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위해 知的財産權 保護를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주요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國際交易에 있어서의 技術規範을 새로 마련하여 모든 나라의 기술개발정책을 일원화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2년 브리튼 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장한데 이어 '94년 1월에는 크린턴 美國大統領이 UR 이후 새로운 이슈 중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 경쟁라운드의 핵심은 公正한 競爭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독특한 市場構造와 企業의 去來慣行까지 평준화 하도록 規範化 하자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美國市場에서는 어느 나라의 企業도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지만 日本市場은 日本만의 독특한 市場構造와 企業慣行 때문에 外國企業들이 경쟁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라운드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금까지의 國際交易은 質이 좋고 값이 싼 商品으로 경쟁을 하여왔으나 WTO 체제 하에서는 商品을 生産 販賣하는 과정에서의 手段과 方法까지도 경쟁의 요체가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Ⅲ. 그린라운드의 出帆準備

그린라운드(Green Round : G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美國 上院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의원이 지난 '91년 10월 워싱턴에 所在한 國際經濟研究所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각 나라가 서로 다른 環境基準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가 국제무역에서 대외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環境問題를 고려하는 새로운 多者間 國際貿易秩序를 논의할 Green Round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시작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보커스 상원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환경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企業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데 비해 환경보호기준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企業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 기준의 차이에 따른 國家間的 비용부담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貿易規制措置가 필요하다는 발상이 Green Round를 추진하려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人間環境會議가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基本憲章이라 할 수 있는 “UN人間環境

宣言”을 채택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지구의 환경문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아래 汎地球的 관심사가 되었으며, 그 결과 多者間 環境協商이 줄을 이어서 현재는 130개에 달하는 환경협정이 발효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협정들 중에서 몬트리올議定書나 바젤協約 등 18개의 國際環境協定은 그 협정내용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未加入 國家나 義務不履行 國家에 대해서는 무역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美國, 獨逸,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고조되고 있는 국민들의 환경보호 요구에 부응하여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환경문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貿易障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부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貿易規制들을 정리하여 WTO의 체제 하에서 環境과 貿易에 관한 國際的 貿易規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Green Round를 출범시키려고 시도하는 취지인 것이다.

Green Round를 출범시켜 보려고 서두르는 나라는 美國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美國의 大統領 直屬機關인 貿易代表部는 '93년 7월에 UR을 이을 多者間 貿易協商을 제안한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 바 있으며, 이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에서는 獨占禁止 등 公正競爭關聯政策, 科學技術政策, 投資政策, 勞動政策, 環境政策 등 다섯개 분야의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UR協商이 막바지로 치닫던 '93년 가을 크린턴 美國大統領은 피터 서덜랜드 GATT 事務 總長에게 서한을 보내 UR協商이 타결되는 대로 지체없이 環境問題를 포함한 새로운 라운드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美國에서는 貿易代表部內에 WTO의 첫번째 라운드를 대비할 특별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와 추진방안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環境保護問題를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WTO의 첫번째 라운드는 Green Round라고 命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UR協商이 타결된 후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는 GATT의 한 기구가 있는데, 지난 '71년에 설치된 이후 특별한 활동실적이 없어서 有名無實했던 “環境的 措置와 國際貿易에 관한 作業班”이 '94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作業班의 임무는 각국의 汚染規制措置와 環境規制措置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현재 國際環境協約의 貿易關係規定이 無差別, 內國人待遇, 政策의 透明性이라는 WTO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包裝規制 및 環境마크制度 등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GATT의 貿易協商委員會로 하여금 環境問題로 인한 多者間 貿易體制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作業日程 및 擔當機構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UR協定 署名式을 위한 關係會議에 제출하였으며 UR協定文 (①最終議定書, ②WTO設立協定, ③關係宣言과 決定) 중에서 세번째 문서인 關係宣言과 決定文書 속에는 貿易과 環境에 관한

決定, WTO準備委員會 設立에 관한 決定, WTO協定 受諾 및 加入에 관한 決定 등 세가지 결정사항이 있다. 貿易과 環境에 관한 決定은 WTO의 제1차 일반이사회에서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하며, WTO의 제1차 閣僚會議에서는 이 委員會의 작업범위를 검토하고, 이 委員會는 지속적인 개발증진을 위해 무역조치와 환경조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며, 또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관련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러한 수정이 開放的이며 公平하고 差別 없는 성격의 WTO 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Green Round의 출범을 위한 물밑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IV. 出帆하려는 그린라운드의 輪廓

環境保護라는 명분아래 貿易을 規制하려는 움직임과 國際的인 環境規制가 貿易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平行선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일부 先進國들이 環境關聯 貿易規制措置를 무원칙적이고 불공평하게 발동시킴으로써 利害當事國 사이에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國際貿易을 萎縮시킬 우려감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自由貿易의 확대라는 世界經濟 共同의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國家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環境과 貿易에 관한 公정한 規範을 제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Green Round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環境과 開發問題를 다루고 있는 UR環境開發會議, OECD를 중심으로 한 先進國그룹, 次期 Round를 준비하고 있는 美國大統領 直屬의 貿易代表部內에 설치된 클린턴라운드 준비위원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機關들이 움직이는 동향으로 볼 때 Green Round는 광의와 협의 두 갈래로 생각해 볼수 있다. 광의의 Green Round는 UN環境會議의 산하기관으로 '92年 리우地球頂上會議 結果로 설치된 持續開發委員會의 활동, 각종 國際環境協約의 체결과 이행 등 현재 진행중인 環境과 開發問題의 논의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협의의 Green Round는 貿易自由化를 추진하는 WTO체제에서 貿易과 環境問題를 조화시킬 수 있는 國際規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Green Round 문제에 대한 논의는 OECD가 環境政策과 貿易政策을 조화 시키기 위해 제시한 汚染負擔原則을 토대로 自由貿易과 環境保護 사이의 관계정립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國際環境協約상의 貿易規制關聯條項과 WTO 체제와의 관계정립, 貿易協定상의 環境關聯條項, 각국의 環境政策 등이 중요한 論議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環境關聯規制措置의 透明性和 明瞭性的 保障, 製品의 生産方式 및 工程에 대한 規制의 基準, 環境補助金, 환경마크附着, 包裝規制 등의 適法性 基準, 분쟁의

해결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國家別 環境基準에 따른 競爭力 差異를 해소하기 위해 環境費用의 차이만큼을 相計關稅로 징수하는 문제가 Green Round에서 뜨거운 논쟁 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先進國들이 주장하는 貿易關聯 環境措置들을 간추려 보면 Green Round는 크게 일곱가지 범주에서 전개 될 것이다. 즉, 環境영향평가, 분쟁해결절차, WTO의 環境조항, 국제환경협정, 생산공정기준, 環境관련 일방적인 무역제재, 環境라벨과 環境포장규제 등이다.

WTO는 國際貿易協商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環境이슈를 발굴하고 環境영향평가를 내리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環境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공론화하고자 할 것이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環境관련 무역분쟁해결 절차가 구체화 되고 國際環境協定을 이행하기 위한 貿易規制를 WTO 가맹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國際環境協定의 일부 내용을 WTO가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몬트리올의정서에 명시된 프레온가스 등의 규제대상물질에 관한 무역관련조항이 WTO 규칙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GATT 규칙은 자기나라 영역 밖의 環境영향을 규제하는 環境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존층의 파괴라든가 기후변화 등과 같은 地球環境問題가 심각해지자 앞으로는 생산공정을 기초로 하는 環境기준이 WTO규칙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WTO는 環境문제와 관련된 일방적인 무역규제의 범위에 관해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環境피해조사제도가 도입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제재 조치를 합리화 시키고자 할 것이다.

한편 環境라벨과 環境포장에 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무역분쟁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Green Round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環境라벨과 環境포장이라는 두 제도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주어서 環境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WTO체제에서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장된 보호무역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V. 그린라운드 協商과 輸出業界의 打擊

環境技術이 획기적으로 개발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Green Round 協商에서 우리나라의 輸出業者들이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마저 갖게 한다. 예를 들면 美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브라이언 법이라고 불리는 新大氣淨化法에 따라 강화된 自動車의 배출가스 규제기준과 燃比基準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96년부터 美國市場에 輸出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0년에 개정된 이 새로운 大氣淨化法은 自動車등 유해가스의 배출원에 대해 방지장치 장착과 저공해 및 개량휘발유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大氣汚染防止基

準은 美國 産業界 뿐만 아니라 交易對象國의 輸出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법개정의 의도는 美國 業界의 일방적인 비용부담 증가가 對外競爭力 약화를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예컨대 自動車의 경우 '96年 美國市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도록 되어있으며 자동차의 배기가스중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은 현재 수준에서 각각 35% 및 60%를 줄이도록 하는 등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연소 부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배기가스 淨化方式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만 自動車輸出을 늘려나갈수 있게 되었는데, 美國으로 輸出되는 韓國産 自動車는 현재의 市場占有率을 유지하는데만도 엄청난 技術開發費用이 들어가야 할 실정이다. 특히 自動車産業은 前後方 聯關效果가 매우 큰 綜合産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으로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공해 또는 무공해 自動車を 개발해야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先進國들이 이처럼 自國內의 環境規制措置를 貿易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GATT규정에 自由貿易의 일반적인 예외조항과 GATT의 7次 라운드인 東京라운드에서 채택된 技術障壁에 관한 協定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環境規制措置의 실효성을 높이고 自國의 産業競爭力을 보호하기 위한 貿易規制措置의 대표적인 사례가 環境相計關稅制度인데 先進國들이 높은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환경비용에 비해 開途國들이 낮은 환경기준으로 얻게되는 상대적인 비용혜택을 보조금으로 간주해서 그 差額만큼을 上計關稅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美國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은 相計關稅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國際汚染防止法의 立法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유럽국가들은 環境相計關稅와 같이 貿易規制의 효과를 갖는 包裝 및 包裝廢棄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獨逸은 포장쓰레기규제법을 개정해서 國內의 生産.流通業者 뿐만 아니라 外國企業에 대해서도 包裝材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회수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처리 의무대상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自動車도 포함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輸出業體들은 엄청난 廢品回收 및 處理費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VI. 그린라운드와 우리의 對應姿勢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開途國등 여러나라들은 불행하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環境問題가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大氣汚染이나 강물의 汚染 및 동식물의 멸종을 더이상 막지못한다면

우리들은 결국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황폐한 미래를 물려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冷戰時代에는 理想的인 이유에서건 人道的인 이유에서건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왔지만 이제 環境問題에 관한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이르렀으며 모든 國家들이 화석연료에만 의존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구의 환경보존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開發途上國도 아니고 그렇다고 先進工業國도 아닌 水準에서 韓國의 企業들은 環境問題에 관련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첨단기술이 없고 자본도 적은 편이어서 環境保全을 위해 투자할 여유도 적은편이다. 環境에 투자할 역력은 별로 없는데 環境問題를 헤쳐나가야 하는 당면과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일임을 자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환경보호를 소홀히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國際交易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개 될 것이 예상되는 Green Round가 아니더라도 프레온가스(CFC)의 생산을 억제하는 몬트리올 議定書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氣候變化協約의 체결 및 발효로 環境과 貿易規制는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도 개선되어야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世界經濟의 環境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經濟的 環境變化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 남으려면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하루 빨리 환경분야에 관한 技術이 先進國 水準에 접근하도록 官民이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환경기술의 개발에 대한 財政投資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에서도 투자규모를 확대시켜 환경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開發途上國들을 규합하여 開發途上國 環境協議體를 구성하고 환경문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규제수단화 하려는 선진국들의 시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선진국들이 확보하고 있는 환경기술을 무상 또는 매우 싼값으로 開發途上國에 이전토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파괴를 주도하면서 일찍이 産業化를 이룩한 先進國들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통해 開發途上國들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려 한다면 開發途上國들의 환경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先進國들이 부담해 주어야 마땅한 것이며 또한 선진국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환경기술도 開發途上國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어야 지구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환경에 대한 危害行爲는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재앙을 미치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한 연후에 事後處理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環境政策은 예방적인 차원으로 政策轉換을 실시하여 기업의 生産活動 過程에서부터 環境保護에 대한 의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經營者들이 意識改革에 앞장을 서야한다.

넷째, 環境問題에 대해 국민과 정부 사이에 대화의 마당이 부족한 실정인데 國民과 政府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環境문제를 다루는 보다 강력한 市民團體의 결성과 활성화가 시급한 것이며, 특히 地球의 環境問題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民間環境團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 環境問題는 어느 나라건 심지어 UN조차 民間環境團體의 研究에 의존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環境을 더이상 파괴하지 않고 經濟社會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經濟主體들이 環境問題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우는 동시에 人口增加率을 억제해야 하고, 資源再活用の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대체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다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그 개발은 國內에서도 가능하지만 외국에서의 개발도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다른 나라의 사막을 개발해서 그곳에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값싼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가져와 주요 에너지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環境을 더이상 파괴하지 않고 발전해가는 經濟開發戰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輸出業體들은 선진국의 “環境마크” 획득을 통한 마케팅戰略을 추진해야 한다. 環境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선진국의 권위있는 環境마크를 획득함으로써 低價品 또는 反環境製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輸出商品이 先進國의 消費者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環境마크를 취득하게 되면 製品의 生産工程 자체에 대한 國際的 環境基準인 이른바 ISO 18000시리즈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Green Round에 의한 非關稅障壁인 環境障壁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프랑스의 輿論調查機關인 SOFRES社가 실시한 프랑스 消費者들의 環境意識에 대한 調查結果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一般商品 價格보다 20%를 더 지불하고서라도 環境마크가 부착된 그린商品(環境保護商品)을 구매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사실을 輸出業者들은 주시해야 할 것이다.

獨逸에서도 10年 前까지 市場占有率이 1%에 불과했던 한 페인트 生産業體가 環境마크를 取得한 후 40%의 市場占有率을 획득한 바 있으며, 電氣톱에 쓰이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한 기업체는 環境마크를 取得함에 따라 2%불과했던 市場占有率이 25%로 높아졌고, 100大 輸出業體들도 環境投資가 輸出增大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보고서가 나온바 있다.

그리고 日本도 環境마크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研究機關에서 실시한 調查報告書에 의하면 지난 '92년말 400여개의 日本企業體를 對象으로 실시한 設問調査에서 環境마크 취득이 판매증가를 가져오게 했다는 응답이 68.3%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3,500개의

유통업체에 대한 設問調査에서도 80% 이상이 앞으로는 環境마크를 부착한 상품취급량을 더 늘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環境마크 채택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볼 때 先進國 消費者들의 環境마크 상품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國際競爭力이 脆弱한 우리나라의 輸出業體들이 環境마크 취득을 소홀히 할 경우 선진국의 시장에 대한 수출 길이 막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輸出業體들은 先進國 消費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環境마크를 취득해야 Green Round 시대에도 先進國 市場을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戰略을 成功的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VII. 맺 음 말

다가오는 21世紀는 環境大國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즉, 環境問題를 외면한 채 經濟開發을 서두른다면 國際社會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더욱이 環境分野의 우르과이 라운드로 할 수 있는 Green Round의 거센 파고와 環境先進國의 압력은 우리에게 經濟開發政策의 큰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先進國들은 自國産業의 보호를 위해 環境問題를 내세워 새로운 貿易障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世界的 經濟的 環境 속에서 開發途上國도 아니며 그렇다고 先進工業國도 아닌 우리나라는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世界的인 環境危機意識을 바탕으로 環境保護와 國際貿易을 결부시키려는 새로운 世界貿易秩序를 수립하려는 多者間貿易協商인 Green Round의 태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戰略的 對應方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先進國들이 環境攻勢 속에서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개별국가들 사이의 環境規制措置보다는 自由貿易의 원칙을 고수해 나갈 WTO의 틀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Green Round를 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産業發展을 명분으로 하여서 그 동안 묵인되어 온 낙동강오염과 같은 公害事故는 이제 더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UR협상의 타결로 더 넓어진 先進國市場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갖추어 Green Round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국민적 姿勢定立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Green Round에 대한 對應은 이제 막 論議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고려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政府는 政府대로, 企業은 企業대로, 民間은 民間대로 각기 해야 할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政府는 懸案으로 제기되는 國際協約에 대한 대책 및 關聯産業에 대한 대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時間的으로 長期的이며, 空間的으로 廣域한 戰略的인 計劃이 필요한 것이다.

企業은 環境問題를 단순히 企業環境의 變化次元이 아닌 企業의 生存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여 國際競爭力의 제고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民間은 政府의 政策이나 企業의 經營活動이 環境改善에 力點을 두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협력하는 노력과 지원이 부가되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國際貿易을 國際競技에 비유할 때 기업은 運動選手이고, 政府는 選手팀의 監督이며, 國民은 應援團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民間, 政府, 企業들의 각 역할이 서로 보완과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원론적인 주장이나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協力 프로그램을 實行에 옮기는 努力이 이뤄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1. 김준한 외 5인,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 1994.
2. 權尚俊, 그린라운드, 文運堂, 1994.
3. 權尚俊, 環境科學, 文運堂, 1993.
4. 최무웅, 돌풍 그린라운드, 정훈출판사, 1994.
5.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뉴라운드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1994.
6. 日本經濟計劃廳 綜合計劃局, 持續可能性의 挑戰, 1993.
7. 日本經濟計劃廳 綜合計劃局, 地球化時代の 日本と 世界, 1992.
8. 日本環境廳 地球環境經濟研究會, 地球環境의 政治經濟學, 다이아몬드社, 1990.
9. 内藤正明, 地球溫暖化時代, 다이아몬드社, 1990.
10. Mason, Robert J., and Mark T. Mattson. Atlas of United States Environmental Issues. New York : Macmillan. 1990.
11. Leonard, H. Jeffrey. Environment and the Poor : Development Strategies for a Common Agenda. New Brunswick, NJ : Transaction, Rutgers University. 1990.